

학교법인 숭선학원

2023학년도 제9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이사정수	7인	감사정수	2인
재적이사	6인	재적감사	2인
출석이사	5인	출석감사	2인

1. 일 시 : 2024.2.16.(금) 11:00~12: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4년 2월 8일(목)]

2. 장 소 : 대구교육관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참석임원 : 7인

- 이사(5인) : 김향자, 김동제, 김석종, 장주석, 한성욱
- 감사(2인) : 김종옥, 박효석

불참임원 : 1인

- 이사(1인) : 정성숙

4. 안 건

【 심의·의결 안건 】

제1호 2024학년도 학교법인 숭선학원 법인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2024학년도 경운대학교 학교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법인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4호 법인 임원(이사) 선임의 건

제5호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호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7호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참여 승인의 건

제8호 기타 토의사항

【 보고 및 기타토의 안건 】

제1호 교원 소속변경 및 복직 보고의 건

제2호 비전임교원 임용 보고의 건

제3호 기타 토의사항

간서명	이사장	김석종	이사	김석종	이사	한성욱
-----	-----	-----	----	-----	----	-----

5. 회의내용

□ 성원보고

【오영택 법인국장이 법인 재직 이사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재직 감사 2명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보고 하다】

이사장 김향자 :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월 중순이 지나니, 한낮기온이 영상20도 이상인 날이 연속되어 벌써 봄이 가고 초여름이 온 것만 같습니다. 환절기에 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회는 개회에 앞서, 그동안 늘 우리 법인과 경운대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던 변천환 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1월 말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임에 섭섭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통지드린 바와 같이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1호) 2024학년도 학교법인 숭선학원 법인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2024학년도 경운대학교 학교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법인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4호) 법인 임원(이사) 선임의 건, (제5호)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호)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7호)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참여 승인의 건과,

「보고 및 기타토의 안건」으로 (제1호) 교원 소속변경 및 복직 보고의 건, (제2호) 비전임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청취한 뒤,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 안건 2024학년도 학교법인 숭선학원 법인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법인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학교법인 숭선학원 전년도 예산 금656,822천원에서 금 55,477천원이 증가한 세입·세출금 총액이 각각 금712,299천원으로 편성된 2024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2조(예산편성요령)와 제16조(예산편성절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및 숭선학원 「정관」 제9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적정하게 수립되었기에, 「정관」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의거 관

간서명	이사장	오영택	이사	김향자	이사	변천환
-----	-----	-----	----	-----	----	-----

련 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 상호 간 2024학년도 법인 본예산안 검토 및 질의 토의 후)

감 사 김종옥 : 전년도 예산에서 55,47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과 지출에 대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지난 제5차 이사회에서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임대차 계약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월임대료 25백만원(VAT제외)에 대하여 25년 7월 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2024학년도에 3억원의 수익이 고정으로 발생 될 예정이며, 이자율도 예년과 비슷 할 것으로 예상되어 책정하고, 지출에서는 불요불급한 요소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지출을 책정하며, 물가상승 대비 각종 제세공과금이 소폭 오를 것으로 감안하여 자금예산을 계획하였음을 자금예산서를 보며 상세히 설명하다】

이 사 김석종 :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예금이자 수익으로 2024학년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지만은 않은 재정 여력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 한성욱 : 네, 김석종 이사님의 말씀처럼, 대학으로 보내는 전출금이 많아 질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요소를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법인 전담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으로는 책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책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법인 자체 인력을 채용 또는 상임이사 제도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되도록 대학으로 보내는 전출금이 많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대학재정에 보탬이 되게 지출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을 상세히 설명하다】

감 사 장주석 : 우리 법인은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력으로, 법인 자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대학 직원들의 겸직 임용을 통해, 최소한의 겸직수당을 지급하여,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국장이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법인 자체의 수익증대 활동을 통해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된다면, 법인에서 자체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잘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이 사 김동제 : 동의 안에 재정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이사 전원께서 찬성하시므로, 『제1호 안건 2024학년도 학교법인 숭선학원 법인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다음 『제2호 안건 2024학년도 경운대학교 학교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경운대학교 전년도예산 금61,085,580천원에서 금7,2586,707천원이 증액된 2024학년도 학교비회계 본예산안(등록금회계 금37,563,312천원, 비등록금회계 금31,960,875천원, 내부거래 금1,1,79,900천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9조(회계의 구분 등)제4항에 따라, 경운대학교 총장으로 부터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에 의거 승인 제청이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및 숭선학원 「정관」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2항제6호에 의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 상호 간 2024학년도 학교비 본예산안 검토 및 질의 토의 후)

감 사 박효석 : 학력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등록금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동제 : 신입생의 등록금 수입은 입학정원 전원이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산정하였으며,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미등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등록금 수입액을 추산하였습니다.

비등록금 회계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입, 각종 국책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임대료 수입 및 기부금 수입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 김석종 : 등록금 책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2,3,4학년의 등록금은 동결되었으며, 2024학년도 신입생인 1학년의 등록금책정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이사장	김동제	이사	김석종	이사	오영택
-----	-----	-----	----	-----	----	-----

이 사 김동제 : 네, 대학의 재정 실정은 어려우나, 국가장학금, 국고보조금, 기타 기부금 수입 활동에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2024학년도 신입생 유치를 위한 우리 대학의 노력으로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를 혁신하여 교육부 정책(정원 20~25%이상 ‘무전공 입학’ 선발 추진) 및 계열·학과·전공 간벽을 허물어 융복합 학문을 실천하고, 자율설계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 실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6개 계열 35개 전공, 5개 학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여 전공에 관계없이 계열별 통합 선발(간호보건계열 제외)을 시행하였으며, 입학 후 1년 동안 전공 탐색 과정을 거쳐, 1학년 2학기부터는 예비전공 선택, 2학년부터는 자율선택에 따라 전공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1학년부터 모든 전공으로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폭넓은 전공선택과 진로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혁신하여,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노력하여 신입생과 편입생에 대한 충원 노력을 제고하고 재학생 충원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교육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대학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정책에 따라 기존 재학생은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며, 신입생의 등록금은 신입생 모집 단위가 산업(유형)별 계열 단위로 구분됨에 따라, 5대 학문분야별 등록금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 야간 모집단위를 제외한 주간 모집단위 전체 신입생은 5대 학문분야에서 ‘자연계열’ 신입생 등록금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나머지 야간 모집단위인 S/W융합계열과 미래산업융합계열 등 2개 모집단위에 대하여는 5대 학문분야 중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등록금을 준용(일부 소액 조정)토록 조치하여, 한국장학재단 국고장학금 지원 판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게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 장주석 : 대학의 재정과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등록률이,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지속적으로 낮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록금 수입 감소가 충분히 예측됨에 따라, 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24학년도 학교비회계 예산(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석종 :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대학 내에서도 구성원들 간의 심의를 거친 2024학년도 본예산안 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이 사 한성욱 : 동의 안에 재정합니다.

간서명	이사장	김석종	이사	김석종	이사	한성욱
-----	-----	-----	----	-----	----	-----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제2호 안건 2024학년도 경운대학교 학교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이사 전원이 찬성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 법인 「정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지난 제5차 이사회 회의 결과 「정관」 변경 사항 교육부 보고 시 회신(시정)사항으로,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8238(2023.9.4)호'로 시정 요구된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제80조(행정 조직)에 대한 보완사항과 총장이 제청하는 제79조(총장 등) 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총장 명칭 및 업무분장을 변경코자 하는 정관개정(안)을 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사 상호 간 검토 및 질의 토의 후)

이 사 김동제 : 총장 보좌기관으로 부총장 직제의 명칭 변경 및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바,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다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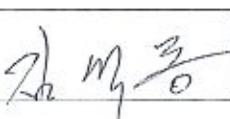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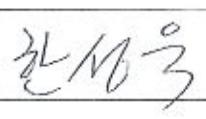
이 사 김석종 : 대학의 최상위 법령인 「정관」의 개정 사안으로 대학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법인 「정관」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사 한성욱 :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대학 구성원 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 장주석 : 동의 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이사 전원이 찬성하시므로 『제3호 안건 법인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다음은 『제4호 안건 법인 임원(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변천환 이사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직 사임을 표명하시어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숭선 학원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및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항제6호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장 김향자 : 금일 이사회 개회에 앞서 말씀드렸던 변천환 이사님의 사임으로 법인 임원(이사)를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국장이 법인 이사 임기와 선임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정관」 제1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기는 3년임을 설명하며,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에 따라 개방이사 2명, 교육이사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바, 변천환 전임 법인이사께서는 개방이사 및 교육이사를 겸 하셨던 관계로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과 절차에 의거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대학의 학사일정과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른 공고기일 준수 등의 사유로 개방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정을 다소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음을 이사회에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후)

이사 한성록 : 대학의 일정을 감안하여 이번 이사회에서는 법인 임원(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사 장주석 : 부결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이사 전원이 찬성하시므로 『제4호 법인 임원(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심여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5호 안건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이사장	金亨澤	이사	김석종	이사	金石宗
-----	-----	-----	----	-----	----	-----

【오영택 법인국장이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경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2인(내부위원)의 임기가 2024.02.29.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며, 변천환 전임 법인 이사님의 사임으로 총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을 관련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다】

이 사 김동재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송선학원 「정관」 및 「교원징계위원회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외부위원(외부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위촉)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2년,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외부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또한, 외부위원의 자격으로는,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을 관련 규정을 보며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 상호 간 의견 교환 후)

이 사 하석로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기가 마루되신

계속해서 연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추천하며, 변천환 전임 법인 이사님의 후임 위원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추천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 경운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임자로 사료 됩니다.

이 사 장주석 : 한성욱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두 분 교수님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계속해서 맡아주시고, 대학 행정 및 교육경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력이 풍부하신 분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동제 :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적임자로 사료 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 사 : 저를 경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약하나마, 위원회 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이사 전원이 찬성하시므로 『제5호 안건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를 교원징계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경운대학교 교원을 연임하여 『임기 : 2024.03.01.~2026.02.28.(2년)』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6호 안건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직원징계위원회도 교원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 2인의 임기가 2024.02.29.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며, 변천환 전임 법인 이사님의 사임으로 총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을 관련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다】

이 사 한성욱 :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오영택 법인국장이 숭선학원 「정관」 및 「직원징계위원회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외부위원(외부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위촉)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2년,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외부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성(性)에 대한 구성비와 외부위원의 자격은 교원징계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상세히 설명하다】

이 사 김동제 : 직원징계위원회도 교원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변천환 전임 법인 이사님의 후임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을 추천드리며, 임기가 만료되어 계속해서 연임

간서명	이사장	김향자	이사	김석종	이사	변천환
-----	-----	-----	----	-----	----	-----

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상호 간 의견 교환 후)

이 사 장주석 : 추천에 동의합니다. 적임자로 사료 됩니다.

이 사 한성욱 : 동의안에 재정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이사 전원이 찬성하시므로 『제6호 안건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를 직원징계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을 연임하여 【임기 : 2024.03.01.~2026.02.28.(2년)】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6호 안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참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P19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96(2024.01.09.)호에 의거,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할 대학은 예산총칙에 협약내용을 사전에 반영하여 명시하고,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총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회부 되었음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 사 김동제 :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종족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지원대상은 정부가 소득분위를 10구간으로 구분하여 성적 기준 충족 시 구간별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정부 시책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참여한 대학은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등록금 동결 및 교내장학금 기준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등록금 동결 및 교내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장학재단과 협약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 참여하며, 책무 이행 및 반환 등의 기준은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르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로 등록금은 인상할 수 없지만, 각종 정부 시책 사업

간서명	이사장	김향자	이사	한성욱	이사	김동제
-----	-----	-----	----	-----	----	-----

및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올해도 국가장학금 2유형에 지원하고자 이사회 의안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 사 한성욱 :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우리 경운대학교 사업참여는 당연합니다.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참여 승인의 건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사 장주석 : 저 역시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참여에 동의합니다. 국가의 대학생 등록금 완화 목적으로 시행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로 우리 경운대학교 재학생에게 수혜 조건에 충족되는 학생들은 모두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 김석종 : 동의 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이사 전원이 찬성하시므로 「제7호 안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참여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 본 이사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으로, 「제1호 교원 소속변경 및 복직 보고의 건」을 청취한 뒤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2항 및 숭선학원 「정관」 제39조(임용)제5항에 의거 경운대학교 전임교원의 전보(소속변경)의 건으로, 경운대학교 「편제 및 정원조정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으로 보고된 건과 지난 2022학년도 제6차 이사회 및 2023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 보고된 파견 교원의 복직 건에 대하여 유인물 첨부하여 이사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다】

■ 소속변경 : 1명

순번	성명	직위	변경전 소속	변경후 소속	반영일자	교원 인사위원회 개최인자
1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 복직 : 4명

순번	소 속	직위	성명	파견기간	파견기관	복직 발령일자	교원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1							
2							
3							
4							

이 사 한성록 : 파견을 다녀오신 4분의 교원분들께서 무탈하게 복직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제화 추진전략에 따라 많은 교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안건에 이의 없습니다.

(이사 상호간 보고자료 검토 및 의견 교환 후)

이시천원 : 친성합니다. 보고내용에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이상으로 제1호 보고 안건, 『교원 소속변경 및 복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안건으로, 『제2호 비전임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청취한 뒤 이사님들의 고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제2항 및 송선학원 「정관」 제39조(임용)제5항에 의기 비전임교원(초빙)에 대한 임용(신규 임용, 계약기간 만료) 현황을 유인물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다】

【 2024-1 비전임교원 임용현황 】

■ 신규임용 : 3 명

순번	소 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자	임용 종료일자	교원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국적
1								
2								
3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 의원면직 : 1명

순번	소 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의원면직인	교원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1							

(이사 상호간 자료 김토 및 의견 교환 후)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보고내용에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김향자 : 이상으로 제2호 보고 안건, 『비전임교원 임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국장으로부터 2월 13일자로 교육부에서 공문 접수된 기본재산 용도 변경(교육용기본자산에서 수익용기본자산으로 변경) 건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추가 보고하겠다고 하니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택 법인국장이 지난 제8차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회부되었던 기본재산 용도 변경 승인의 건으로 경상북도 북구 흥해읍 칠포리 619번지 외의 학교용지 토지면적 9,402(m²), 건물면적 1,123(m²)인 교육용 기본재산인 칠포연수원에 대하여,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991(2024.02.08.)호>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보전 없이 허가되었음을 상세히 보고하다.

향후 조치사항으로는, 용도변경 내역을 재산대장에 반영하고, 2023학년도 결산서에 명시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하며, 법인에서는 부동산 수익사업 유치를 위한 부동산 임대 입찰 공고(안)을 마련하여 입대업체를 유치도록 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도록 준비할 것 임을 관련자료를 보며 상세히 보고하다】

이 사 김석종 :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기준에 적합하여 기본재산 용도변경이 허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교육용으로 미활용된 재산을 용도변경하여 수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임대수익을 발생하게 하여, 법인 자금운영 및 대학으로 보내는 전출금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이의 없습니다.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보고내용에 이의 없습니다.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이사장 김향자 : 이상으로 모든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의사항이 있습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6. 회의록 대표 간서명자 선출

회의록 대표 간 서명자로 김향자 이사장, 김석종 이사, 한성욱 이사를 선임하는 김향자 이사장의 동의와 장주식 이사의 재청으로 이상 3인을 간 서명자로 선출하다.

7. 폐회 선언

이상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동일 12시 정각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본 이사회 회의록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참석 이사, 감사 전원 서명하다.

2024년 2월 16일

학교법인 승선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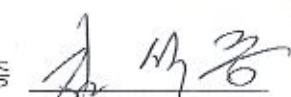
이사장 김 향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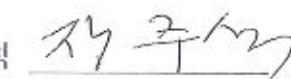
이 사 김 동 제



이 사 김 석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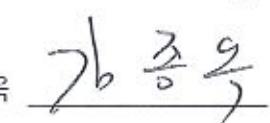
이 사 장 주 식



이 사 한 성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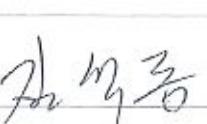


감 사 김 종 옥



감 사 박 효 석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